심혈관계 질환

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발작성 심방세동과 심방조동 29

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87년 2월 3일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부터 대형버스 제 조공정에서 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. 이후 2015년 9월 건강 검진 중 확인된 심장조동으로 대학병원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나 2017년 9월부터 심전도 상 발작성 심장세 동 소견 확인되어 2017년 11월 16일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한 뒤 추적 관찰중이다. 근로 자는 2014년 12월말부터 자신의 작업 장소에 건조대기장 위치의 변경으로 휘발성 유기화 합물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 하였다.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작업환경

근로자는 버스차체부품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년 12월 말부터 인접 장소에 손건 에나멜이 도포된 액슬의 적재장소가 설치되었다. 이에 2016년부터 유기화합물 노출평가가 실시되었고, 차체조립 및 실링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상 톨루엔의 최고 노출 수준은 2.38ppm 이었다. 액슬 대기장 인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최고 노출 수준은 6.34ppm으로, 현장 작업자의 톨루엔 노출 가능 수준은 2.38~6.34ppm으로 추정 할 수 있었다. 도장부스의 부적절한 작업화경 관리에 의해 유기화합물이 차체라인으로 확 산되어 차체부품조립 작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톨루엔의 수준은 하도부스 도장작업자(최 고 노출수준 18.70ppm) 또는 도료배합실 작업자(최고 노출수준 2.85ppm)의 노출수준 이하라 판단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심혈관질환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15년 9월 실시한 건강검진 상 부정맥 소견 보여 추가적인 검사 후 발작성 심방조동을 진단 받았으며, 이후 추적 관찰 중 2017년 9월부터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 하 에 2017년 11월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고 약물 복용과 함께 추적 관찰중이다. 1987년 어깨 병변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과거력 및 당뇨의증. 이상지질혈증. 신경정신질환으로 치 료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. 음주는 월평균 1-2회 소주 1병이며, 흡연은 하지 않았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만 52세가 되던 2015년에 심방조동을 진단받았고 2017년 심방세동 진단 및 증상악화로 전극도자절제술(RFCA)을 시행 받은 뒤 추적 관찰중이다. 1987년부터 □사업장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약 32년간 버스차체부품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. 다양한 종류의 유기용제 노출은 부정맥 유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및 보고들이 있다. 톨루엔에 노출 되면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고농도 노출이거나 또는 심방이 아닌 심 실부정맥이 대부분이다.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톨루엔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 수준은 톨루엔 2.38~6.34ppm으로 추정하며 이는 미국 산업위생가협회가 제안한 건강장애 유발 가능성의 가장 낮은 수준인 20 ppm 이하로 심장 에 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. 또한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적이 있어 이로 인해 유발된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근로자의 심방세동와 심방조동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. 끝.